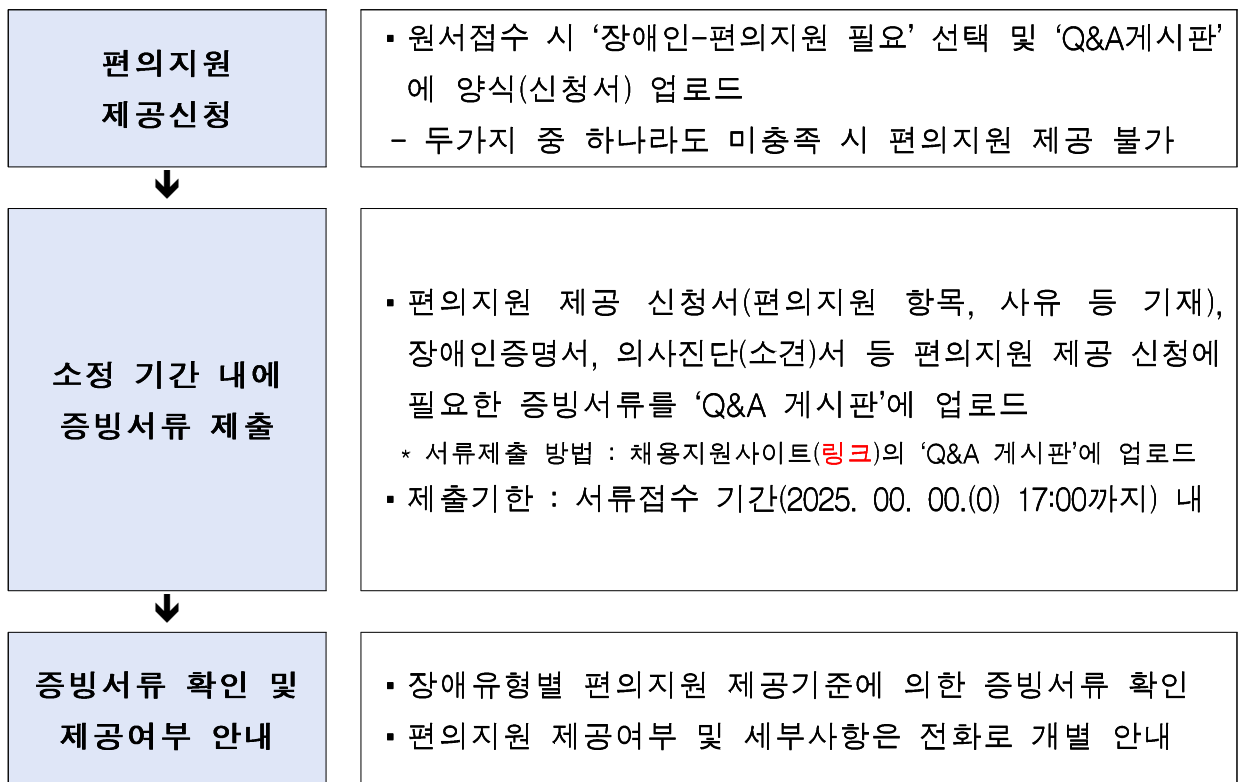


[과학기술인공제회 채용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]

□ 편의지원 제공 대상자

- 과학기술인공제회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

□ 편의지원 신청 방법



□ 편의지원 신청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

- [붙임]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“편의지원 제공 신청서”에 기재한 내용이 반드시 “의사진단(소견)서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“편의지원 제공 신청서”와 “의사진단(소견)서”내용이 다른 경우 “의사진단(소견)서”에 근거한 편의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채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 (하기 유의사항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)
- *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※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

※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2. 발급일자 :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3.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
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
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중·경증 여부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축소문제지,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

- “축소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”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□ (붙임)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

장애유형	편의제공 내용 및 방법 예시
지체장애인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	•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•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• 필요한 경우 필기고사장 별도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•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(휠체어 사용자)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답안지 대필 지원
뇌병변 장애인	•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•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• 필요한 경우 필기고사장 별도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• 휠체어 사용가능 책상 제공(휠체어 사용자)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답안지 대필 지원
시각 장애인	•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• 축소문제지 제공(독서확대기 사용자) • 독서확대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• 필요한 경우 필기고사장 별도 배정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답안지 대필 지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
청각 장애인	•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• 필요한 경우 필기고사장 별도 배정
기타시험실사시판의 장이 정하는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	•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편의제공 내용 결정

□ (붙임)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

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

신청인	응시분야			
	성명		수험번호	
	생월일		이메일주소	
	연락처(휴대전화)		장애정도	
의사진단서 첨부 여부	☐ 첨부완료 ☐ 미첨부(사유 :) ※진단서 미첨부 시 편의제공 불허			
편의제공 신청내용	※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기술			
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귀하

※유의사항

- 1.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3.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신청서 내용 및 장애 정도를 판단한 후 합격자에 한해 편의제공 여부 및 제공 사항에 관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